

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준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6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31일

발 의 자 : 이준형, 봉양순, 김소양, 김제리,  
문병훈, 한기영, 김종무, 이상훈,  
고병국, 이광호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한강공원 내 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정 단체나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다양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공원 이용시설을 특정 단체나 사람이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.(안 제12조 제3항)
- 나. 공원 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자적 예약시스템 구축·운영을 규정함.(안 제12조 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특정 단체나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원이용시설을 다양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④ 시장은 시민이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, 공원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①·②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장은 특정 단체나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원이용시설을 다양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</u> <u>④ 시장은 시민이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, 공원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